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

이규엽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김현수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장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이현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hyunjin.lee@kiep.go.kr, Tel: 044-414-1324)

박지현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

엄준현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전문연구원 (jheom@kiep.go.kr, Tel: 044-414-1149)

강민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ang@kiep.go.kr, Tel: 044-414-1196)

차 례

1. 연구 배경과 목적
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
3. 2025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쟁점과 평가
4. 한미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과 우려
5. 정책 대응 방향

주요 내용

- ▶ 미국의 디지털 통상 압박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점검할 시점임.
 - 본고의 작성 목적은 NTE 보고서에 산발적으로 적시된 내용의 유기적 연결(큰 그림 그리기), 디지털 통상 이슈 관련 국내 논의의 참고 자료 및 고려사항 제공, 정책 시사점 제언 등임.
- ▶ 한국의 디지털 부문에서 시행 중인 규제와 앞으로 시행될 규제에 따라 국내외 IT 기업, 국내 클라우드 기업, 국내 통신사와 통신장비 기업 등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됨.
 - 2025 NTE 보고서에 '데이터 현지화, 경쟁정책,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이 새롭게 등장했고, 위치 기반 데이터와 망사용료에 관한 서술은 진행형 이슈인 것으로 파악되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재보험 서비스 등을 둘러싼 갈등은 부분적으로 해결됨.
 - 한국의 디지털 규제(정부 조달 제도 포함)는 외국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데이터 현지화,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통신장비 인증 등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제기됨.
- ▶ NTE 보고서를 통해 식별된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을 넘어 한미 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로 협상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미국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한국의 우려가 뚜렷이 드러남.
 - 미국의 요구사항: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우려: 한미 간 AI 발전 수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달라, 양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이익(mutual benefit)의 담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구상과 구체화, 규제와 제도(데이터 규제, 지재권, 경쟁정책 등) 변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보완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언함.
 - 외부 압력에 밀려 통상 현안을 검토하거나, 단기 디지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세부 논의와 쟁점에 매몰 되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데이터 규제, 경쟁, 지재권,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장기 안목과 통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시점임.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진지하게 구상하고 로드맵을 채워나가는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전략을 고민할 시점임.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된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하에서 국내 데이터 규제 수준, 지재권 보호 강도, 경쟁정책의 기초를 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바람직함.
 -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인증 정책, 경쟁정책, 지재권 정책 등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 규제·법·제도·관행 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내 논의 과정에 '숲'을 보려는 노력 이외에도 규제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함.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 미국의 디지털 통상 압박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앞으로 압박 수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2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 미 디지털 협회나 주한 미 대사 등이 한국 측에 디지털 규제·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국내 부처(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을 취함.
- 트럼프 2기 들어서는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행위, 정책이나 관행 등에 따라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Reciprocal Trade and Tariffs, 2025. 2. 13. White House Homepage)이며, 대통령, 부대통령, USTR 대표 등의 최근 발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미국의 한국을 향한 디지털 통상 압박 수준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2025. 2. 6.)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지명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면서, 필요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3월 31일 공개한 NTE 보고서상 한국의 디지털 관련 사항이 다수 언급됨.
-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조율하는 회의 및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장 개선 협상 등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NTE 보고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율 발표 당시, 상호관세의 산출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고려했다고 주장

■ 2025 NTE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점검할 시점임.

- 미국의 對한국 무역장벽 관련 내용에는 디지털 산업에 속한 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만이 다수 포함되는데,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미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NTE 보고서를 검토함.
 - 미국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하여 적시한 내용이 실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바, 본고에서는 ‘NTE 보고서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미 기업이 제기한 불만이자 개선 요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연구 목적

- 본고의 작성 목적은 NTE 보고서에 산발적으로 적시된 내용의 유기적 연결(큰 그림 그리기), 디지털 통상 이슈 관련 국내 논의의 참고 자료 및 고려사항 제공, 정책 시사점 제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특정 정책의 쟁점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부록 1. 언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 부록 2.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관련 통계, 부록 3. 한미 FTA와 주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수준 비교

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

- 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USTR의 NTE 보고서를 통한 압박
- 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통상장벽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규제정책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 옴.
 - 2018년 한 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의 로비 지출액 규모는 2011년보다 약 184% 증가한 6,500만 달러에 달함.
 - 2024년 디지털 부문에서 발생한 로비 지출 총액은 1억 달러를 넘어섬(opensecrets.org).
-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한 벌금, 관행, 규제 등으로부터 미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함(2025. 2. 21.).
 - 트럼프 1기 당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 관련 행위, 정책, 관행)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2017. 10. 10.)에서 미 지재권 절취 관련 위원회의 리처드 엘링스는 지재권 절도에 따른 미국의 피해액(2013~17년, 누적)이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음.
- 미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은 백악관에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촉구하며, 미국 AI에 불리한 외국의 규제 견제, 국제표준 주도, 기술 보호 등을 담은 공식서한을 제출함(2025. 3. 12.).
- USTR은 미 디지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과거의 불만사항을 승계해서 기록하거나, 교역상대국이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관련 정책을 설명하면서 불만 제기 및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평가를 덧붙임.
 - 2025 NTE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무역장벽(법률, 규정, 정책, 관행 등)을 11개 범주로 구분하고, 관련 내용을 국가별로 기록함.

표 1. NTE 보고서에 적시된 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시각을 반영한 이해관계자별 영향

		디지털 통상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데이터 현지화	망사용료	산업기술 보호법	경쟁정책	위치 기반 데이터	시청각	보험	클라우드		통신장비
이해관계자	미 측 우려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 및 관련 과징금 범위 확대	한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의 시장 독점과 해외기업 역차별 우려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등)에서 해외 클라우드 사용 금지	플랫폼 법에 대한 우려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현지 콘텐츠 등이 OTT에도 적용될 우려	재보험 업무에 필요한 기업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제한	별도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취득 필요	사실상의 추가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 보안평가제도, SES) 필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처벌 부족
	미국 IT 기업	과징금 확대 및 전송 제한	차별적 부담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다수 미국기업이 해당	글로벌 통합 서비스 제한	OTT로 규제 확장 시 운영 제약	재보험 데이터 이전 제한	CSAP 인증 요건으로 진입장벽	추가적인 보안인증 요건 필요	지재권 보호 강화 필요
국내 IT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시	글로벌 운영 부담 증대	ISP와의 관계 소폭 유리	해외 기술 활용 가능성	이중 기준으로 운영 필요	해외 지도와의 연동 어려움	해외 확장 시 플랫폼 단일 운영이 어려움	서비스의 경쟁력 저하 가능			국내 환경과 상이한 국가 진출 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
	국내 시장	국내 경쟁 유리		국내 경쟁 유리	일부 기업 제외 가능	국내 경쟁 유리	OTT로 규제 확장 시 운영 제약	국내 경쟁 유리			
국내 클라우드 기업		상대적 우위 확보		우선 공급 대상자				국내 인증체계에 익숙, 조달 수혜 가능			
국내 통신사와 통신장비 기업			망사용료 직접 수혜						국내 인증체계에 익숙, 조달 수혜 가능		
국내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가능성	콘텐츠 비용 상승 가능성				OTT 콘텐츠 선택권 제한 가능성				
해외 사용자		접근 제한 서비스 존재				지도·교통 등 품질 저하	글로벌 콘텐츠 접근성 제한 가능성 존재	해외 서비스 연계 시 제한 가능성 존재			

주: 긍정적(녹색), 일부 긍정적(연두색), 일부 부정적(분홍색), 부정적(붉은색) 등 영향을 색으로 표시.

자료: 2025 NTE 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미국의 시각] 디지털 부문에서 시행 중인 한국의 규제와 앞으로 시행될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영향 평가

- [미국 IT 기업] 한국의 디지털 규제(정부조달제도 포함)는 외국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데이터 현지화,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CSAP)와 통신장비 인증 등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
 - 미국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적 요인; 과거 NTE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
- [국내 IT 기업] 국내 규제 체계는 국내 기업에 일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해외 진출 시 데이터 이전 제한, 글로벌 서비스 연동 문제 등 운영 제약 및 비효율성 발생
 - 국내외 기준 간 정합성 확보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의 핵심
- [국내 클라우드 기업] CSAP 등 인증제도에 익숙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유리한 상황이며, 산업기술보호법 등 자국 중심 보호제도의 수혜 가능성 존재
- [국내 통신사 및 통신장비 기업] 망사용료 정책과 보안인증 요구 체계를 통해 실질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공공 부문 공급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 망사용료의 수혜를 받는 국내 통신사가 플랫폼 및 IT 서비스업 진출 시 국내외 경쟁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가능성

■ [표 1]은 한국의 규제(제도, 법 등)에 따른 국내외 이해관계자별 영향을 종합하여 도식화한 것임.

3. 2025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쟁점과 평가

■ 2025 NTE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내용을 식별하고 2024 NTE 보고서와 비교하여 내용 변화를 검토한 후 간단한 평가를 덧붙임.

-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이슈인 데이터 현지화(신규 쟁점)와 위치 기반 데이터(미해결), 경쟁과 관련된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신규 쟁점)와 망사용료(미해결)를 우선하여 검토하고, 관련하여 언론에서 다루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부록 1에 붙임.
 -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제한(신규 쟁점)을 추가로 다룸.
- 공공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해결),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부분 해결), 재보험 서비스(부분 해결), 지식재산권(해결) 등을 추가로 검토함.
 -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요청 사항인 디지털콘텐츠 보호 강화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미 NTE 보고서에 적시된 지재권 내용을 추가로 검토함.
- 각 주제에서 NTE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국내 제도를 서술하며, 종합하여 간략한 평가를 덧붙임.

표 2. 2025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쟁점 요약

항목 제목	해결 여부	한국의 조치 내용	국내 논의
데이터 현지화	신규 쟁점	—	부록 1. 언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 참고
위치 기반 데이터	미해결	—	
경쟁정책(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규 쟁점	—	
망사용료	미해결	—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신규 쟁점	—	
공공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	해결	미 측 요구인 암호화 알고리즘 수용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부분 해결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 시스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 유지	
재보험 서비스	부분 해결	투명성 제고 필요	
지식재산권	해결	—	

자료: USTR(2025), “2025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가. 미해결, 신규 쟁점

1) 데이터 현지화

■ [NTE 보고서] 한국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한국은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제한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가 필요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2025 NTE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항목임.

■ [국내 제도]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만 있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의2 제1항).¹⁾
 -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제64조의2 제2항), 합리성이 있음.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명령 제도 도입(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평가] **현행 과징금 규정에서도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부과 목적을 고려할 때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우리 정부는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2024년 발주, 최종보고서가 제출 및 공개됨.²⁾
 - 과징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는 비단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임.
 - 한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명령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바,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EU 등과 연대하여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도록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위치 기반 데이터

- [NTE 보고서] **한국정부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 데이터를 해외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해외 공급업체가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임.**
 - 위치 기반 기능(교통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포함하는 대화형 서비스를 한국 영역 밖에서 제공하는 외국 업체는 외국 데이터 처리 센터에 의존해야 하므로, 한국에 있는 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
 - 2024년 말 기준 한국정부는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승인한 사례가 없음.
 - 주요국 중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제한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2024 NTE 보고서와 내용 같음.
- [국내 제도] **지도 등의 반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될 경우 관계 기관장으로 구성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 반출을 결정해야 함.³⁾**
 - 구글이 1: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4월 중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5월에 결정할 전망이다.⁴⁾
- [평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등의 반출이 「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한 불허 사유인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정부는 신의성실하게 결정해야 함.**
 - 구글의 비공식적 의도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확보’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음.⁵⁾
 - 이미 반출이 허용된 1:2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관광객 길 찾기 등 이용자 편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지적
 - 애플 역시 비슷한 축척의 지도 데이터만으로도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

2) 정책연구관리 PRISM 홈페이지(2025),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170000-202400027> (검색일: 2025. 4. 9.).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41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4) 「구글 지도반출 여부...5월 1차 결론 유력」(2025. 3. 31.),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331000239>(검색일: 2025. 4. 9.).

5) 「기고 지도 반출 요구하는 구글의 속내」(2025. 4. 1.),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279752>(검색일: 2025. 4. 9.).

3) 경쟁정책(온라인 플랫폼 규제)

- [NTE 보고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2024년부터 논의해온 ‘한국시장 내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에 사전 금지 조치 및 의무를 부과하는 안과 관련하여 투명성 제고 등 요청
 -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국기업은 두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기업은 종합적인 경쟁 수준 분석 및 규제 영향 평가 등 한국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 미국정부는 한국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5 NTE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항목임.

- [국내 제도] 2023년 말 발표된 플랫폼법 제정 계획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로 2024년에 결정됨.

- 2023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음.⁶⁾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음.
 - 멀티호밍 제한: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방해하는 행위
 - 최혜대우 요구: 경쟁사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 자사 우대 행위: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대하는 행위
 - 끼워팔기 행위: 플랫폼 서비스 외 다른 상품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2024년 2월 공정위는 2023년 말부터 추진해온 플랫폼 법(「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었음.
 -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투명성 개선을 요구함.

- [평가] 우리 기업의 우려 및 전문가의 반대의견도 있었던 만큼, 미국기업이 요청한 종합적인 경쟁 수준 분석과 규제 영향 평가, 그리고 미국정부가 촉구한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사전 지정 등이 과도한 규제”라는 국내 업계의 반발이 있었고, 6개월간 운영한 전문가 TF에서도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강행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음.⁸⁾
- 공정위는 「(가칭)플랫폼법」을 제정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⁹⁾¹⁰⁾

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3. 12. 19.),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 2. 8.),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8) 「플랫폼법' 백지화?...공정위 우왕좌왕에 업계만 들쭉했다」(2024. 2. 13.),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6769>(검색일: 2025. 4. 10.).

9) 공정거래위원회(202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p. 8.

10) 시장 지배적 플랫폼 지정 방식을 기존에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포함되었던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4) 망 사용료

■ [NTE 보고서] 일부 한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한바, 외국 콘텐츠 공급업체의 망사용료 납부는 경쟁 중인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조치는 소수의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에 의한 한국시장 과점체제를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2024 NTE 보고서와 내용 같음.

■ [국내 제도]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음.

-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도 없지 않았으나, 적정 대가 산정 또는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지닌 법률안이 대부분임.
-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넷플릭스는 2000년 국내 업체를 상대로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2021년 1심에서 패소함.¹¹⁾
- 2023년 넷플릭스는 2심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국내 업체와 소취하에 합의하고, 양사는 요금제 결합상품 출시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계획을 발표함.¹²⁾

■ [평가] 우리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대부분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우선시하며, 망 이용 계약이 불공정할 경우 규제한다는 합리적인 내용이고, 미국기업에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님.¹³⁾

- 미국정부와 소통하며 해결하되,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국가와 힘을 모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5)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 [NTE 보고서] 한국정부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외산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을 제한해왔고, 이에 미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정부가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협력해온바, 지침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함.

- 한국정부는 반도체, 로봇, 항공기 분야 등의 핵심기술 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목록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한국정부는 외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외산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을 제한해옴.
- 2025 NTE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항목임.

반경쟁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충분한 항변권을 보장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계획임.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2) 「SKT·SKB,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망이용대가 합의」(2023. 9. 18.),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918000232>(검색일: 2025. 4. 9.).

13) 「기괴글로벌 빅테크의 터무니 없는 이중 잣대」(2025. 4. 7.),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407000141>(검색일: 2025. 4. 9.).

- [국내 제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현행 「산업기술보호지침」은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외국기업이 접근·열람 등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지침은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도 ‘수출’의 한 방법으로 규정함.¹⁴⁾
 -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¹⁵⁾
 - 현행 지침에는 승인 신청을 위해 취할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개최된 제58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개발 및 보급하겠다고 밝혔음.¹⁶⁾
- [평가] 외산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롭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글로벌 협력이 가능하며, 국가 간 및 기업 간 첨단기술 개발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음.
 - 오늘날 첨단기술의 발전이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국가 연구자 사이의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흔하며, 글로벌 기업의 연구 조직도 인재 확보 등의 이유로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음.
 - 국경 간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을 막는 조치는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첨단기술 개발경쟁에서 조치국이 뒤처지게 하는바, 데이터 활용과 보안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함.
 -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용 고급 데이터 보호는 암호화 키를 사용자의 기기에만 보관함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도 이를 알 수 없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해도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참고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¹⁷⁾

나. 해결, 부분 해결

1) 공공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

- [NTE 보고서] 한국정부가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만 인정하여 시장접근이 제한됨.
 - 한미 양국은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의 당사국으로, 한 당사국의 CCRA 인증 시험실에서 인증된 제품은 다른 당사국의 인증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
 -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개발한 ARIA 및 SEED 암호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암호화 모듈만 인정해왔음.

14) 「산업기술보호지침」(시행 2023. 7.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1호, 2023. 7. 26., 폐지예정)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제10호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및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16) 「국가핵심기술 기업도 해외 클라우드 쓴다·빠르면 이달 가이드라인」(2025. 4. 7.), 『SBS Biz』,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42133824&mediaCodeNo=257>(검색일: 2025. 4. 10.).

17) Apple 홈페이지, “iCloud data security overview,” <https://support.apple.com/en-us/102651>(검색일: 2025. 4. 10.), 재인용: 엄준현, 이보람(2025),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 126.

- ARIA와 SEED도 국제표준(ISO)에 부합하지만, 주로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임.
- 미 공급업체의 AES 암호화 알고리즘은 한국정부의 검증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접근이 사실상 제한됨.

■ [국내 제도] 2026년부터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목록에 미 측이 요구해온 AES 암호화 알고리즘이 추가될 예정임.¹⁸⁾

- 암호 모듈 검증제도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소통·저장되는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암호 모듈의 안정성과 구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세부 절차는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을 적용함.

■ [평가] 국제표준과 차이가 있는 국내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제도의 합리화 및 선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 보안업체가 고객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자국 정보당국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로이터 등 외신이 제기한 사례도 있어,¹⁹⁾ 우리 정부가 외산 암호 모듈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2024년 9월 9일, 우리 국가정보원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하고자 다층 보안체계(MLS: Multi-Level Security)를 발표함.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C 등급(Classified, 기밀정보), S 등급(Sensitive, 민감정보), O 등급(Open, 공개정보)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차등화된 보안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임.
 - C 등급: 국방, 외교, 안보, 수사 등 기밀정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 생활과 직결된 정보
 - S 등급: 개인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O 등급: 이 외 모든 정보와 가명 처리 정보
- 기관별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제도에 비해, 정보를 기준으로 보안정책을 차등화하는 새 제도는 합리 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평가됨.

2)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

■ [NTE 보고서]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는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여전히 상당한 장벽임.

- 한국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제도(CSAP: Cloud Service Assurance Program)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됨.
- CSAP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객을 위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클라우드서비스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응해야 하며,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를 갖춰야 함.
- 2023년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고시」를 개정하여 CSAP하에서 모든 공공 네트워크를 세 가지 위험 등급으로 나누는 체계를 도입했음.

18) 국가사이버안보센터(2025),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https://www.ncsc.go.kr:4018/PageLink.do?link=forward:/PageContent.do&tempParam1=&menuNo=060000&subMenuNo=060200&thirdMenuNo=\(검색일: 2025. 4. 8.\)](https://www.ncsc.go.kr:4018/PageLink.do?link=forward:/PageContent.do&tempParam1=&menuNo=060000&subMenuNo=060200&thirdMenuNo=(검색일: 2025. 4. 8.)).

19) 「RSA, 암호화SW에 '백도어' 심고 '뒷돈' 챙겨」(2023. 12. 22.),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131222141434\(검색일: 2025. 4. 8.\)](https://zdnet.co.kr/view/?no=20131222141434(검색일: 2025. 4. 8.)).

- 그러나 최소한 중간 등급 이상의 CSAP 인증을 받아야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는 한국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여전한 장벽으로 작용함.

■ [국내 제도] 2023년 CSAP 개정으로 공공·민간 부문 간 물리적 망 분리가 하(下) 등급에서는 논리적 망 분리로 완화됨.

-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
- 2022년 1월 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정부 고시이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2022년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등급제 세부 실행방안이 결정됨.
- 이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신청인이 보안인증을 신청할 때 희망 등급을 선택하도록 함.
 - 상 등급: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 업무용 운영 시스템
 - 중 등급: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 하 등급: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 2023년 1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상 등급과 중 등급은 고시 시행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에 시행할 예정임(부칙 제1조).
- 2017년 고시에서는 공공·민간용 클라우드서비스 영역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23년 고시에 서는 하 등급에 대해서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개정하여 논리적 망 분리를 인정함.²⁰⁾

■ [평가] 하 등급에도 시스템 및 데이터 현지화가 요구되며, 상 등급과 중 등급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음.

- 2023년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클라우드의 보안 요구사항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고시와 같음.²¹⁾
- 그러므로 논리적 망 분리로 완화되어도 현지화 요건이 유지되는 한 미국업체의 불만은 여전할 전망이다.
- 또한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 중간 등급 이상의 CSAP 인증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바, 제도 구체화 및 개선을 위한 양국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3) 재보험 서비스

■ [NTE 보고서] 미 측은 ‘재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한국정부의 통지가 있었으나, 공개된 근거 문서가 없어 초래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함.

- 과거에는 재보험 서비스 회사가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없어 불만을 표시했음.

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시행 2023. 1.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 일부개정) 별표 4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제14.2.1항(물리적 위치 및 영역분리).

21) 위의 자료.

- 한국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처리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함을 미 정부에 2022년, 2024년 통보함.
- 공개된 근거 문서가 없어 초래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 재보험 회사들은 2024년에도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능했음.

■ [국내 제도] 우리 국내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한 여러 방법을 제공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법」이 적용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²²⁾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²³⁾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지만(제32조 제6항), 국외 이전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위탁, 제공(조회 포함), 보관을 ‘이전’이라 정의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했거나 정보 주체에게 알린 경우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한 다섯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²⁴⁾
-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재보험 서비스 회사는 신용정보 처리위탁을 위해 신용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다만 개인 고객의 고유 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국외로 이전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 고시로 규정²⁵⁾

■ [평가] 미국은 우리 정부의 정책 내용 또는 방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근거 문서가 없다는 등 예측 가능성 부족을 지적한 것이므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조치가 필요함.

4) 지식재산권

■ [NTE 보고서] 한국은 NTE 보고서에서 일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1호.

2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5)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 2021. 3. 25., 타법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제1항.

-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다양한 지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집행조항을 갖추게 되었다고 서술함.
- 과거 2021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개정 내용 중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있으나, 2025 NTE 보고서에서는 특정 이슈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음.
- 다만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 지적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수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언급함.

■ [평가] 매년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이 반복되나, 별도로 대응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미 FTA를 통해 구축된 강력한 지적권 보호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함.
- IP5(Intellectual Property 5) 중 하나로서 미국과 함께 효율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2024 NTE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임.

4. 한미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과 우려

■ 한미 간에 디지털 통상 분야의 비관세 장벽, 불공정 관행, 정책, 규제, 제도 등에 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미 간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공식 협정문 수준에서 미 디지털 기업의 요구사항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추가로 고려하면 미 디지털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 양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문에 특정 문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도입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됨.
 - 이는 미 디지털 기업으로서 미래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미래 어느 시점에는 한미 간 디지털 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가. 미국의 요구사항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플랫폼 및 기타 중개자의 책임 제한 조항 등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정부 1기(2017~20년)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디지털 규범 구축을 선도함.
 - USMCA(2018. 11. 서명, 2020. 7. 발효)에서는 기존 북대서양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대체하고 개정하여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중개 플랫폼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포함

-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2019. 10. 서명, 2020. 1. 발효) 역시 USMCA의 디지털 무역 챕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함.
- 트럼프 정부 2기(2025~28년)에 미국 국내적으로는 알고리즘 편향성/검열, 반독점 이슈 등으로 빅테크 기업을 일정 부분 견제할 가능성도 있으나, 국외적으로는 빅테크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보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2020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적 견해를 의도적으로 억압하거나 검열한다’며 알고리즘 편향성 및 검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²⁶⁾ 트럼프 대통령도 빅테크 기업이 1996년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일부인 美통신법(1934) 제230조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불공정하게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한 바 있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알고리즘 편향성을 조사하고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플랫폼 사업자 면책을 위한 요건을 개정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부문의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²⁷⁾ 이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DOJ: Department of Justice)은 빅테크 기업에 강력한 반독점 집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원칙하에,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중개 플랫폼 사업자 면책 등 친빅테크적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 핵심산업인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 등의 규정을 포함하는 디지털 규범을 수립하고자 관세 등의 협상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에 발효한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²⁸⁾이 AI 개발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였으며,²⁹⁾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 행정명령³⁰⁾을 발표하여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명시하고,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한 AI 액션 플랜을 개발하도록 지시함.
 - 미래 핵심산업인 AI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의 확보와 자유로운 활용이 필수이며,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는 AI의 핵심 지재권으로서 이러한 기술의 보호 및 이전 제한이 매우 중요한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보호 등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을 양자 또는 다자 무역협정에 반영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26) <https://judiciary.house.gov/sites/evo-subsites/republicans-judiciary.house.gov/files/2020-10/2020-10-06-JDJ-to-Nadler-re-Tech-Investigation.pdf>.

27)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595703893773894>.

28) Executive Order 14110 of October 30, 2023,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1/01/2023-24283/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29) Executive Order 14148 of January 20, 2025,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8/2025-01901/initial-rescissions-of-harmful-executive-orders-and-actions>.

30) Executive Order 14179 of January 23, 2025,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31/2025-02172/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나. 한국의 우려

- 한미 간 AI 발전 수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서로 달라, 양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이익(mutual benefit)의 담보 여부가 불확실함.
 - 한국의 개인정보, 비즈니스 정보 등 디지털 데이터가 미국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등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할 경우, 한국의 민감하거나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미국기업이 제공한 클라우드에서 저장·분석될 수 있으며, 일부 미국 플랫폼은 한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메타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 파생 모델 등을 자사 AI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미국 AI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은 자국의 공공·민감 데이터는 자국 내 보안구역에서만 처리하는 원칙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용 데이터, 의료기록, 유전체 데이터, 에너지 소비·인프라 운영 정보 등은 ‘해외 기업이 접근하거나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순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공공·의료·국방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신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³¹⁾
 -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협정 등의 체결로 서버 현지화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빅테크의 국내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 진입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등에서 시장 잠식이 우려됨. 특히 한국은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정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한국은 EU GDPR과 유사한 정보 주체 동의 중심 구조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침해 시 사후적 구제 시스템으로 자유로운 정보 이전이 다폴트 값임.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하고 EU와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유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한국정부가 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 사이버 보안, 선거 개입 방지, 정치적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플랫폼 운영을 통제할 경우, 디지털 무역협정상 ‘정당성, 필요성, 최소침해 원칙’ 등 복잡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한 디지털 통제조치이더라도 미국이 하면 ‘안보’로 간주되는 등 규범의 비대칭적 적용이 발생할 수 있음.

5. 정책 대응 방향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외부 압력에 밀려 통상 현안을 검토하거나, 단기 디지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세부 논의와 쟁점에 매몰되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데이터 규제, 경쟁, 지적권,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장기 안목과 통찰을 통해 우리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나갈 시점임.

31) 또한 미국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도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등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데이터 규제의 변화] 유럽연합이 2016년 GDPR을 도입한 이후 세계 각국의 데이터 보호체계가 유럽연합의 GDPR에 포함된 다수 조항을 벤치마크하는 방식으로 진화함을 이해
 - 미국 역시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GDPR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기록하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연합 간 프라이버시 쉴드의 무효 판정 이후에 양국 간 새로운 데이터 규칙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
- [지재권 보호의 진화] 미국이 관세를 레버리지로 삼아 다수의 국가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이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으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슈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미국과 공동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성도 큼.³²⁾
 - 글로벌 차원에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집행 역시 강화된다면, 현재 성장 속도가 빠른 한국 디지털콘텐츠(음악, 드라마, 온라인게임 등)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구상과 구체화] 여러 번의 수정이 필요할지라도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진지하게 구상하고 로드맵을 채워나가는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전략을 고민할 시점임.

- 교역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 체결국, 시기, 속도, 수준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함.
-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임.
 - NTE 보고서보다 양질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광범위한 설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재무 정보와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 실적을 함께 조사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디지털 무역장벽의 특징을 지속 파악하고 추적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 무역정책 수립과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 우리 기업에 관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정보의 통계화는 향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사후영향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음.
- USTR이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으로서 무역협정 최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협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존중하여 한국 이용자에게 실질적 사전통제권과 사후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규범을 수용하고, AI 학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공공, 위치정보, 유전체 등 민감 정보는 예외로 하여 원칙적으로 국내 저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수 있음.
 - 전략 산업 및 민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한국도 대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시장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이 공공조달 참여기회 등에 있어 미국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협정 도입과 더불어 국내 데이터, AI, 클라우드 법제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혁신과 기술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점 체계를 마련하여 협정 효과, 데이터 흐름 등을 평가하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2) USTR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부 EU 국가(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약 30개 국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함.

- [데이터 규제, 지적권, 경쟁정책 등]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된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하에서 국내 데이터 규제 수준, 지적권 보호 강도, 경쟁정책의 기초를 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바람직함.
 - 데이터 이전·활용, 플랫폼 경쟁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 원칙을 마련하고, 국내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임.
 - 동시에 국내 규제나 제도의 변화는 잠재적 디지털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시장 진입과 수출 여력 확대 여부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의 함수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규제환경이 디지털 기업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완대책: 디지털 편]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인증 정책, 경쟁정책, 지적권 정책 등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 규제, 법, 제도, 관행 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내 논의 과정에 숲을 보려는 노력 이외에도 규제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함.
 - 과거에는 농수산업이 국내 보완대책의 대표 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업,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 변화에 따른 피해 기업이나 산업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포함하여 어느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록 1과 2에서 제시한 자료가 공청회, (산학연, 민관 등)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규제 변화에 따른 승자와 패자(winners and losers)를 식별하기 위한 단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함.
 -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 제도 변화나 국가 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용이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적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KIEP**

부록 1. 언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

가. 데이터의 국외 이전

부록 표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에 관한 의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함. ·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함으로써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높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것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상황에서만 국외 이전이 허용되므로, 데이터 저장과 처리에 의존하는 국가 간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GDPR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음. · 매출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과징금 감소로 이어지는 맹점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 ·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 행위보다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과징금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산업계) · 높은 과징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과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IT 업계) · 전체 매출액 기준은 과징금의 본질에 위배;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한정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경총) · 현행법상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함. · 위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해외 매출까지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불만(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 -개정법으로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미 기업: 메타(216억 원, 2023. 11.), 애플(24억 원, 2024. 1.)
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 ·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외국계 IT 기업)
역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관련 업계)
기업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 불필요한 자원과 시간 소모(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해당 국가의 사업자와 협약 체결 등)

주: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대 의견에 해당함.

자료: 최근 5년간 언론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2) 위치 기반 데이터의 이전 제한

부록 표 2. 위치기반 데이터의 이전 제한에 관한 의견

<p>해외 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한국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음. ·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울 경우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 구글이 접근할 수 있는 1:25,000 지도로도 B2C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가능(국내 지도업 서비스 사업자) · 다른 국가(중국, 이스라엘 등)도 정밀 지도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며 국외 반출 금지
<p>데이터 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면허제로 규제: 한국이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 ·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차별 ·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 규제 개선 · 정부 규제가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독점을 방치하며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저해
<p>인보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설치 없이 고정밀 서비스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는 정당한 경쟁을 저해(국내 업계) · 고정밀 지도를 제공받으려면 한국의 인보 상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함. · 한국기업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규제를 받으며 세금도 내는데, 한국의 정밀 지도를 가져가 해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님. ·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도 데이터를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중복 분산 저장해 관리해야 하므로 국외 반출 불가피 ·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반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p>조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 상황에서 군사, 안보 위험 가중; 해외 반출 시 한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 ·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것이지만,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입법조사처 보고서) ·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5,000 지도에서는 주요 보안시설이 삭제되어 있지만, 구글이 이미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보안시설 사진을 제공하므로, 이 위성사진과 1:5,000 지도를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원 가능 · 위성사진에 한국의 보안시설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음. · 구글은 우리 정부에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는 대신 시설에 대해 '블러(Blur)'나 '모자이크'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가 보안시설의 좌표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됨. · 구글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할 시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짐.
<p>공간산업 생태계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 지도가 반출된다고 해서 안보 위험이 커질 이유가 없음(구글 지도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나 다른 업체의 초정밀 지도를 구글어스와 결합해 군사 정보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음). · 청와대·국정원 같은 보안시설은 이미 구글뿐 아니라 러시아 등 전 세계 주요 위성영상 서비스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구글 지도에서만 가려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안이 되는 것은 아님. · 지도의 해외 반출 금지는 안보 위협이 아니라 규제 권한을 통한 소수의 내수 기업 이익을 보호하려는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의 유입에 따른 지도 서비스 경쟁이 오히려 국내 공간정보 시장을 활성화 · 지도 반출 시 시장 경쟁을 통해 관련 지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항공 측량 업계 관계자)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맵 활성화로 인해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약화 가능성 · 구글 서비스에 따라 국내 IT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 구글 지도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되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가 위축 될 것
소비자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반출 제한으로 해외 기업의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약화 ·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면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방문 외국인 대다수가 이미 네이버 지도, 파파고 등 국내 앱을 사용 · 구글맵을 이용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불편함을 호소 ·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구글 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구글 서비스로 세계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전 세계 74개 언어를 지원하는 자사 지도보다 세밀하게 정비할 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 (구글) · 지리적 데이터 수출이 허용되고 구글 지도의 다국어 지원, 오프라인 지도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경우,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226억 달러의 관광 수입 증가 예상, 약 8,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3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구글 지도의 위치 기반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추정(동서문제연구원, 2024)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업체가 외국어로 된 지도를 서비스하면 됨. · 위치 기반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 구축, 혁신 증가, 경쟁 확대, 소비자 후생 증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국내 개발자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 ·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자동차 길 찾기, 도보 길 찾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한국 스타트업이 구글의 지도 API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 한국의 지도 반출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혁신 흐름에 뒤처짐.
국내 기업 역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이 이번 지도 반출을 계기로 한국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 · 지도 반출은 국내 산업의 혁신이나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지도 산산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향상에 넷플릭스·유튜브가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도 앱 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에 기여 · 표준 역할을 하는 구글맵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정밀한 지도 서비스를 하는 국내 기업(네이버, SK텔레콤 등)은 정부 규정에 따라 보안시설 데이터를 삭제하고, 매년 서버와 서비스 운용에 대한 평가를 받으나, 구글이 요구하는 대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 · 정부의 각종 규제(국내 서버 설치 등)에서 벗어나 있는 구글과 국내 기업 간 불공정 경쟁

주: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대 의견에 해당함.

자료: 2015년 이후 보도된 언론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나. 경쟁과 공정

1) 경쟁정책(온라인 플랫폼 규제)

부록 표 3.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의견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서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빠지면,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 - 규모로 경쟁하는 플랫폼 업계에서 해외 기업들이 규제에서 지금보다 자유로워지면 국내 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독과점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기업에는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주요 플랫폼은 제외해 차별적이라는 주장 -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은 포함되지만, 다른 주요 기업들은 제외 -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은 제외될 수 있어 제재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의견
국내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과점 폐해(자사우대끼워팔가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대우 요구)에 한해 신속 대응하는 플랫폼법이 꼭 필요 - 플랫폼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독과점의 폐해가 더 크다는 주장 - 소상공인업계는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 -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국 플랫폼은 제외된 점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국내 IT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기 - 한국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은 유럽식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내 IT 업계는 새로운 법안이 외국 플랫폼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결부된 만큼 빅테크 제재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이를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기 때문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한국 내 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차량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택시는 시장의 98%를 점유하며 월평균 1,32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해 규제 대상이 될 것이지만, 동남아시아의 그랩(Grab)이나 고젝(Gojek) 같은 해외 슈퍼앱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규모임에도 카카오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을 것(디플로멧)] - 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내 환경과 맞지 않는 유럽의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차별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 -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는 이미 해외보다 약하지 않은 상황이며, 유럽의 플랫폼 규제를 따라가는 것은 과다하다는 주장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방적 거래 중단, 판촉비 전가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의 성장 기회가 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디지털경제연합은 해당 규정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법안을 환영, 국내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바,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 -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 - 소비자들이 더 공정한 가격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 - 플랫폼 규제가 도입되면 대형 플랫폼들이 제공하던 편리한 서비스(예: 새벽배송, 할인 혜택 등)가 축소 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정은 더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 - 외국 경쟁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잠재적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한국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이며,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정의 입법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고객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 - 규제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 - 일부 국내 IT 기업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구글, 메타 등)의 독점적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 하다고 주장
공정한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특히 중국 기술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러함. 이는 또한 안보 문제를 야기할 것 - 한국 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을 동등한 입장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 - 해외 플랫폼의 매출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만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당국은 구글을 포함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이 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인데, 이는 공정하지 않음) - 현재의 법안은 국내 플랫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 -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와 로컬 플랫폼을 동일하게 다룬다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결국 글로벌 기업들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혁신을 저해 -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인 태미 오버비는 온라인플랫폼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 하며, 이는 미국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무역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플랫폼법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미국 상공회의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플랫폼법 추진 재검토를 요청 -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중대한 무역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제출된 CCIA의 성명은 플랫폼법이 주요 비관세 장벽임을 강조(CCIA는 특히 이 법안이 구글, 메타, 애플과 같은 미국 거대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

주: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대 의견에 해당함.
자료: 최근 언론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2) 망사용료

부록 표 4. 망사용료에 관한 의견

망사용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면 망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함. - 망사용료법이 해외 CP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CP들은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음) - 업계도 망사용료 부과는 해외 특정 업체가 아니라 국내외 CP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경쟁적·역차별과는 무관 - 구글은 미국, 프랑스, 독일의 일부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망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미국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도 미국 내에서 CP에 망사용료를 받고 있음. - 미국, EU 등 주요국의 망사용료 정책 논의 동향이나 망사용료 규제가 국내·외 통신시장 및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망사용료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콘텐츠 전송량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 중 - 트위터가 철수한 이유는 단순히 트위터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 실패 때문이며, 망사용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통신업계) - 한국의 망사용료는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타국에 비해 망사용료가 비싸다고 비판(미국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인 트위터는 한국시장에서 철수) - 한국의 망사용료는 세계 다른 지역의 20~30배 수준으로 매우 높음(네트워크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피어링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은 망 연결 시 한 쪽이 비용을 내는 '페이드 피어링'을 요구)
반경쟁적 효과(한국 기업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대형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함(통신업계). -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병행하므로 미국 CP의 비용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함. - 망사용 대가가 단순히 '통신 3사 배 불리기'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
독과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통신사의 콘텐츠 제작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 망사용료 납부가 한국 ISP 시장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 - 국내 ISP의 콘텐츠 서비스는 글로벌 대형 OTT 등 콘텐츠 사업자에 비하면 서비스 점유율이나 시장 영향력이 낮은 수준 - 한국의 ISP 시장을 지배하는 3대 사업자의 독과점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
망중립성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사용료와 망중립성은 무관한 개념('자유로운 망 사용'과 '망 품질의 차이'는 무관한 사항) - 망사용료 법안이 ISP가 모든 콘텐츠(CP)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
이중 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양면 시장 - 이미 이용자들에게 망사용료를 받는 통신사가 공급자에게도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적절 - CP는 국내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넷플릭스·유튜브 등은 미국 ISP에 이미 망사용료를 낸 상태라, 한국 ISP에 추가로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부담) -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등 자국 ISP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데다 해저 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부담
트래픽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P가 국내 트래픽을 사용하는 비중이 막대(구글, 넷플릭스, 메타 3사의 비중이 42.6%, 부표 7 참고) - 국내 ISP는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증설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짐. - 망사용료 부과로 인해 글로벌 CP의 트래픽 사용량 축소 노력에 효과적임. -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은 망사업자(통신사)의 의무

<p>소비자 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사용료 부과를 통해 ISP가 망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소비자) - 망사용료 부과는 이중과금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일부 시민단체와 CP) - 망사용료 부과로 인해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 - 망사용료 법안에 사실상 반대: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 고려할 필요, 자칫 국내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한국게임산업협회) -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CP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내 소비자 및 인터넷 생태계, 콘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한국인터넷기업협회)
<p>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의 부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CP(넷플릭스와 유튜브 등)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입법 지지(ISP인 통신업계) - 망사용료 부과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망사용료를 해외 빅테크에 부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IT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 - 국내 IT 업계는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통신망 투자 확대에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외국의 ISP가 별도의 망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일부 위축될 수 있음. - CP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 콘텐츠 소비자 역시 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것
<p>역차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CP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역차별 - 국내 CP는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해외 CP들은 이를 지불하지 않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법안은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 - 한국의 CP(네이버나 카카오 등)는 한국 ISP와의 계약을 통해 부담(통신사가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CP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국내 CP만 부담하는 등 용량과 품질 면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 -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망사용료 부과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추가 비용 부담이 중소 CP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p>콘텐츠 산업 위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사용료를 통해 ISP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면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창작 활동과 혁신을 저해 - 글로벌 CP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p>국내기업의 해외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통신사도 해외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음(네이버). - 해외에서도 한국과 같은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망사용료 의무화는 결국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료를 올리고 국내 CP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

주: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대 의견에 해당함.
자료: 최근 언론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부록 2.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관련 통계

가. 한미 디지털 무역 현황

□ [수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2017년 약 2억 9,231만 달러에서 2022년 약 9억 1,175만 달러로 증가함(연평균 25.5% 성장).

○ 대미국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7~22년간 연평균 45.4% 성장했으며, 2022년 대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7%에서 2022년 35.5%로 증가함.

부록 표 5. 대미국 전자상거래 상품 수출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292,314	382,415	563,140	409,050	856,057	911,747	25.5
對미국	49,734	42,685	64,250	70,603	260,746	323,233	45.4
비중(%)	17.0	11.2	11.4	17.3	30.5	35.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의 대세계 상품 수입은 2017년 약 12억 3,574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6억 1,931만 달러로 증가함(연평균 16.2% 성장).

○ 대미국 전자상거래 수입은 2017~22년간 연평균 9.8% 증가했으나, 대세계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6%에서 2022년 40.3%로 감소함.

부표 6. 대미국 전자상거래 상품 수입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1,235,738	1,588,058	1,859,872	2,183,684	2,688,558	2,619,307	16.2
對미국	662,187	833,237	913,177	993,137	1,180,773	1,056,880	9.8
비중(%)	53.6	52.5	49.1	45.5	43.9	40.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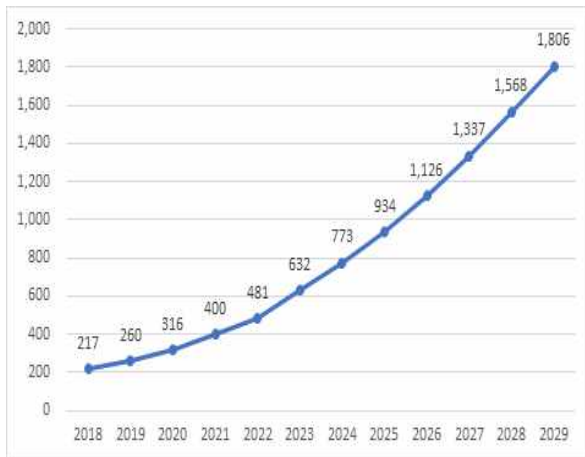
나. 공공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 전 세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는 2025년 약 9,340억 달러에서 2029년에 약 1조 8,0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부록 그림 1).

- 2024년 미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약 3,8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2029년에는 약 8,940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한국은 2024년 약 100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보였으며, 2025~29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7.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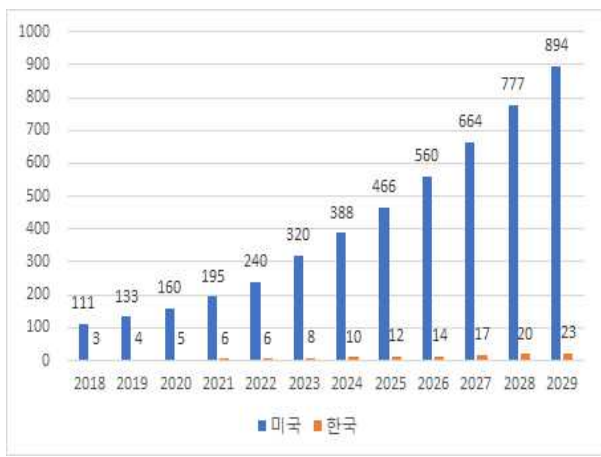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부록 그림 2. 미국과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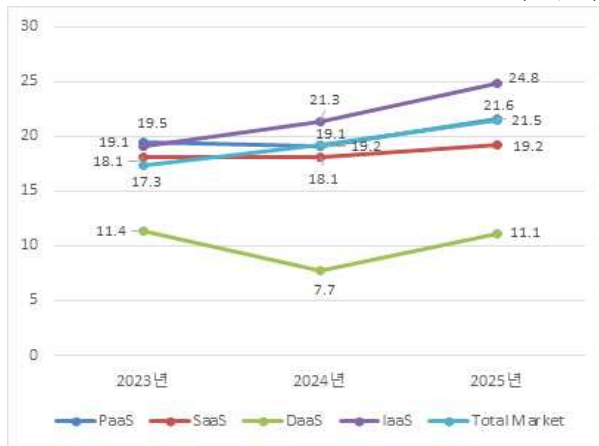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부록 그림 3.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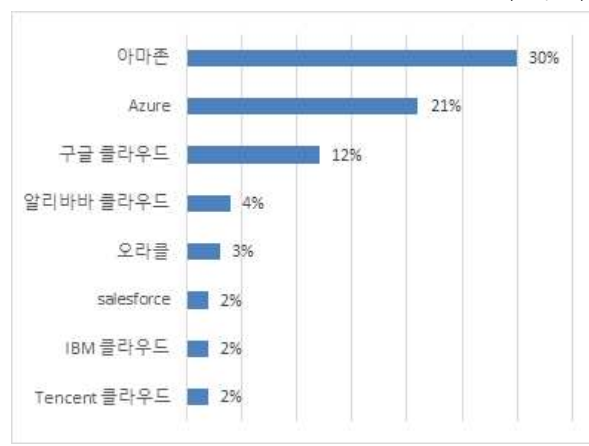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tatista.

부록 그림 4.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2024년 4/4분기)

(단위: %)



-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체는 2025년에 2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IaaS 부문이 24.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부록 그림 3).
- 2024년 4/4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30%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플랫폼(21%)과 구글 클라우드(12%)를 앞섬.

- 아마존, Azure, 구글 등 '빅 3'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쟁 업체들은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

다. 망사용료 관련 데이터

□ 국내에서 일평균 트래픽 비중이 높은 상위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모두 글로벌 플랫폼으로, 2023년 기준 이들 글로벌 플랫폼이 전체 트래픽의 42.6% 비중을 나타냄.

- 특히 구글의 트래픽 비중은 2020년 25.9%에서 2021년 27.1%, 2022년 28.6%, 2023년 30.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트래픽 비중의 약 1/3을 차지함.
- 국내 사업자 중 네이버 비중은 1.7~2.9%, 카카오 비중은 1.1~1.4%에 그침.

부표 7.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네이버	1.8	2.1	1.7	2.9
카카오	1.4	1.2	1.1	1.1
구글(유튜브 등)	25.9	27.1	28.6	30.6
넷플릭스 코리아	4.8	7.2	5.5	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2	3.5	4.3	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 2023년 기준, 국내 콘텐츠 공급자(CP)의 망사용료 비중은 68.91%, 미국의 비중은 31.09%임.

- 같은 기간 네이버는 5,364억 달러, 카카오는 2,299억 달러를 망사용료로 지급하였지만, 구글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음.

부표 8.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사용료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기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	AfreecaTV	12.94						11.41	7.82
	네이버	63.30						0.00	53.64
	카카오	25.87						0.00	22.99
	왓차	0.00					6.25	6.21	7.51
	한국 총계	102.11	0.00	0.00	0.00	0.00	6.25	17.63	91.96
	한국 비중(%)	88.76	0.00	0.00	0.00	0.00	32.28	29.74	68.91
미국	페이스북(메타)	12.94	13.28	13.62	12.89	12.68	13.11	11.65	11.49
	구글	0.00							
	넷플릭스	0.00						30.00	30.00
	미국 총계	12.94	13.28	13.62	12.89	12.68	13.11	41.65	41.49
	미국 비중(%)	11.24	100.00	100.00	100.00	100.00	67.72	70.26	31.09
전체 총계	115.04	13.28	13.62	12.89	12.68	19.36	59.27	133.45	

자료: Roslyn Layton, Toshiya Jitsuzumi, and Dae Keun Cho(2024), "Broadband Network Usage Fees: Empi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Versus Observed Broadband Investment and Content Development in South Korea," p. 36.

부록 3. 한미 FTA와 주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수준 비교

대분류	조항	한미 FTA	CPTPP	USMCA	USJDTA	한성 DPA	DEPA	WTO 전자상거래 안정화본
디지털 제품	관세	의무 (15.3.1)	의무 (14.3)	의무 (19.3)	의무 (7)	의무 (14.5)	의무 (3.2)	의무 (11)
	비차별 대우	의무 (15.3.2)	의무 (14.4)	의무 (19.4)	의무 (8)	의무 (14.6)	의무 (3.3)	-
전자상거래 활성화	국내 전자거래 체계	-	의무 (14.5)	의무 (19.5)	의무 (9)	의무 (14.7)	의무 (2.3)	노력 (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의무 (15.4)	의무 (14.6)	의무 (19.6)	의무 (10)	의무 (14.8)	-	의무 (5)
	물류	-	-	-	-	노력 (14.9)	노력 (2.4)	
	전자송장	-	-	-	-	의무 (14.10)	의무 (2.5)	의무 (7)
	전자지급	-	-	-	-	의무 (14.11)	인정 (2.7)	의무 (10)
	종이서류 없는 무역	노력 (15.6)	노력 (14.9)	노력 (19.9)	노력 (19.9)	의무 (14.12)	의무 (2.2)	의무 (8)
	특송화물	(의무) (7.7)	(의무) (5.7)	(의무) (7.8)	-	의무 (14.13)	의무 (2.6)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노력 (15.8)	의무 (14.11)	의무 (19.11)	의무 (11)	의무 (14.14)	의무 (4.3)	-
	컴퓨팅 설비 위치	-	의무 (14.13)	의무 (19.12)	의무 (12) 금융 -의무(13)	의무 (14.15) 금융-노력 (14.16)	의무 (4.4)	-
	정부 데이터 공개	-		노력 (19.18)	노력 (20)	노력 (14.26)	노력 (9.5)	노력 (12)
	개인정보 보호	-	의무 (14.8)	의무 (19.8)	의무 (15)	의무 (14.17)	의무 (4.2)	의무 (16)
기업과 소비자 신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노력 (15.5)	의무 (14.7)	의무 (19.7)	의무 (14)	의무 (14.21)	의무 (6.3)	의무 (14)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	의무 (14.17)	의무 (19.16)	의무 (17)	의무 (14.19)	-	-
	암호화기술 사용 ICT 제품	-	(의무) (Annex 8-B)	(의무) (Annex 12-C)	의무 (21)	의무 (14.18)	의무 (3.4)	-
	스팸메시지 규제	-	의무 (14.14)	의무 (19.13)	의무 (16)	의무 (14.20)	의무 (6.2)	의무 (15)
	사이버 보안 협력	-	인정 (14.16)	노력 (19.15)	노력 (19)	인정 (14.22)	인정 (5.1)	노력 (17)
기타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 용에 관한 원칙	인정 (15.7)	인정 (14.10)	인정 (19.10)	-	인정 (14.24)	인정 (6.4)	인정 (13)
	플랫폼 사업자 면책	-	-	의무 (19.17)	의무 (18)	-	-	-
	인공지능	-	-	-	-	노력 (14.28)	노력 (8.2)	-

주: 조항에 강행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의무조항(mandatory clause), "shall endeavour to"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당사국의 노력 또는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 노력조항(endeavour clause), 유익함, 중요성 등을 인정하는 선언적 내용인 경우에는 인정조항(Recognition Clause)으로 분류함. 의무조항과 노력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의무조항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력조항과 인정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노력조항으로 분류함.
자료: 한미 FTA, CPTPP, USMCA, USJDTA, 한성 DPA를 반영한 한성 FTA, DEPA, WTO 전자상거래 안정화본(INF/ECOM/87)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